

부천시의용소방대설치폐지조례안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1992년 5월 12일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2년 5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1992년 5월 26일

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민방위과장 심재산)

가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○ 조례 근거 법규인 소방법 개정

- 근거 : 소방법 법률 개정 (법률 제 4419, 91.12.14)

- 개정 : 소방법 제86조 2항 (의용소방대 설치)

- 내용 : 의용소방대는 그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, 명칭, 구역, 조직, 정원, 임면, 훈련, 검열, 복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3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의원명	주요요지
없	음

나. 반대토론

의원명	주요요지
없	음

5. 수정안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

없 음

6. 심사결과

원안가결(의원 만장 일치)

7. 소수의견

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9. 체계 자구 심사 내용

없 음

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1992. 5. 1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2. 5. 13

라. 상정일자 : 1992. 5. 26

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민방위과장 심재산)

3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- 광역 소방체제 전환에 따라 종전 시·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가 경기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 의용소방대 자녀 학자금 조례는 그 적용의 필요성 소멸로 폐지

- 경기도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
- 경기도 자치법규 공포

- 공포일자 : '92. 1. 14

- 번 호 : 조례 제2232호

- 조례명칭 : 경기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
-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공포

- 광역소방체제 전환에 따라 종전 시·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제정 공포

- 조례명칭 :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(조례 제2231호)

- 공 포 일 : '92. 1. 14

- 시 행 일 : '92. 1. 1

- 내 용 : 명칭, 조직 및 정원, 임

용, 복무 및 교육훈련
의용소방대 연합회 등

- 부천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대하여
는 그 적용의 필요성 소멸로 동건 조례
를 폐지

3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의 원 명	주 요 요 지
없	음

나. 반대토론

의 원 명	주 요 요 지
없	음

5. 수정안 요지

없 음

6. 심사결과

원안가결 (의원 만장일치)

7. 소수 의견 요지

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9. 체계 자구 심사 내용

없 음

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2년 5월 12일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2년 5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1992년 5월 26일

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한일택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 각급 지방자치 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통일시키고

- 시의 제정을 보다 건전하고 체계있게 운영집행 관리하여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결산검사위원회 선임대상자 선임 방법 변경

- 종전 결산검사위원회 3인중 지방의회 의원중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자치 단체장이 추천한 4인중 2인을 선임하던것을 시장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서 3인을 선임토록 변경하는 것임

3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시장의 추천한 1인은 의회동의 없이 1명을 포함해서 2인을 의회에서 선출하는것인지 아니면 4인으로 늘어나는 것인지	시장의 1명을 추천하면 추천한 1인을 의회에서 선임하고 나머지도 2인도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임.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

의 원 명	주 요 요 지
없	음

나. 찬성토론

의 원 명	주 요 요 지
정월남의원	종전 시장이 4인을 추천 그중 2인을 선임하고 의회의원중에서 1인을 선임하던 것을 시장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서 3인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의회에 시의 재정집행에 대한 결산검사할 수 있는 위원의 선임권한을 강화시켜 주는것으로써 원안에 찬성함